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414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준호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19가소247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부산 기장군 C 과수원 2,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면적 약 150㎡의 가건축물을 건축하고 일부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판넬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건축물과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E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한 후 영수증을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중순경 피고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0,000,000원은 원고가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행강제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3.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행강제금 30,567,000원이 체납되었고 이를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를 교부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명목으로 건넨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지급기일 ‘일람출금’, 액면금액 3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G(위 F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 G 명의 계좌로 2015. 4. 15. 5,000,000원, 2015. 4. 27. 5,000,000원, 2015. 9. 22.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30,000,000원을 이행강제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0원(= 3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015. 4. 15.부터 2015. 9. 22.까지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6,000,0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총 20,000,000원(= 14,000,000원 + 6,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나)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7. 10,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원고가 G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가 G 명의 계좌로 2015. 4. 15.부터 2015. 9. 22.까지 송금한 합계 14,000,000원은 피고가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일 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6,000,000원으로 변제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한 후 건축자재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5,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을 선이자를 떼고 대여해주었다가 피고가 2015. 4. 15.경 자신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위 돈들을 변제하였으며, 관련 차용증은 위 돈을 받을 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위 F은 2010. 6. 1.부터 2016. 6. 1.까지 ‘H’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상태였고, 원고에게도 1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던 점, ③ 피고는 제1심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G 명의 계좌로 14,000,000원, 원고에게 현금 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특히 위 현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변제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